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(안) 심사보고서

2026년 10월 15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0월 1일, 포항시장
2)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7일
3) 상정일자
  ❍ 제334회 포항시의회(제1차 정례회)
    •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10. 15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손의곤 재정관리과장)

1) 제안이유

❍ 202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포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❍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0를 출연금으로 배정

3) 관계법령

❍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
❍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, 제152조,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94조

3. **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** (전문위원 : 김경희)

○ 본 출연안은 포항시가 부담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,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, 지방재정 분권 및 지방 세제·세정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과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출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5,135천원*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에서 정하는 출연 규모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출연금 산정은 적정함.

* 산출근거: '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(451,348,302천원) × 1.0 / 10,000 = 45,135천원

○ 해당 법령에서 정한 출연 규모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0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포항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출연금 규모가 전년(44,036천원) 대비 1,099천원 증가한 것임.

4. **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**

5. **토론의 요지 : 없 음**

6. **심사결과 : 원안가결**